

수 신 자 내부결재
(경 유)

제 목 코로나19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특근매식비 집행 기준 변경

코로나19 위기경보 ‘심각’ 단계 격상에 따른 재단 임직원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특근매식비 집행 기준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

1. 관련 근거

- 가. 2020년도 예산 집행 기준(안) 수립(기획예산팀-98, '1. 10.)
- 나. 코로나19 관련 출퇴근 시간 조정 협조 요청(공기업담당관-2480, '2. 23.)

2. 변경 사유

- 가. 코로나19 위기경보가 ‘심각’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, 재단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해 대중교통 혼잡도 완화 및 코로나19 전파 위험 최소화
- 나. 원활한 연장근로 근무자 식대 지원을 위해 '20년 예산 집행 기준 중 특근매식비 인정 기준 변경

3. 변경 내용

- 가. 시행기간 : '20. 2. 24.(월) ~
- 나. 시행내용 : 평일 오후 1시간 이상 연장근로 근무자(20시 이후 퇴근자) 특근매식비 인정

변경 전	변경 후
- 평일 오후 2시간 이상 연장근로 근무자 (20시 이후 퇴근자)	- 평일 오후 1시간 이상 연장근로 근무자 (20시 이후 퇴근자)

4. 행정 사항

- 가. 코로나19 관련 출퇴근 시간 조정에 대한 서울시 별도 통보 전까지 해당 기준 적용
- 나. 상기 변경 내용 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예산 집행 기준 준용. 끝.

2020.02.24 팀원 하형도	2020.02.24 팀장 노준식	2020.02.24 본부장 나상훈	2020.02.25 대표이사 이재성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합의자

시행 기·획·예·산·팀-205 (2020.2.25.) 접수

우 04551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(저동1가, 나라키움저동빌딩) 8-9층 / <http://www.sto.or.kr>

전화 02-3788-8111 전송 02-3788-0888 / hdha@sto.or.kr / 공개